

연번	과세대상	납부자	위반내용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금액	공사송달 사유
1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1546-*	백*옥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49.85㎡) 사전입주(위반면적 : 34.82㎡)	12,220,610	폐문부재
1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234-**	이*심	무단대수선(위반면적 : 94.32㎡)	1,226,240	폐문부재
13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234-**	이*심	무단대수선(위반면적 :54.54㎡)	439,040	폐문부재
1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464-*	조*순	무단대수선(위반면적 :25.92㎡)	1,949,180	폐문부재

5. 관련법규 :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

6. 시정안내 : 시정 전·후 사진을 2021.11.15.(월)까지 관악구청 건축과로 제출

7. 기타사항 : 해당기일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관악구청 건축과 ☎02)879-6415).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1-1861호 봉천1-1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03.23.)로 수립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부문)」상 정비 예정구역으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5호(2009.11.26.)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된 ‘봉천1-1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

2.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관악구 주택과에 우편(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주택과 재건축팀)) 또는 팩스(☎02-879-7831)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I.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간 (2021.10.29.(목) ~ 2021.11.28.(일))

II. 열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02-879-6321), 보라매동 주민센터

III.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연면적, 예정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정비계획 변경 절차 이행과정(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열람장소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IV.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변경

구분	구역번호	동명	지번	면적(ha)	계획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단계	주택유형	비고
기정	1	봉천동	728-57	3.41	210%	50%	평균15층	1	단독	제3종일반
변경				3.56			-			

V.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안)

1.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봉천1-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관악구 봉천동 728-57번지 일대	34,142.0	-
변경	봉천1-1 재건축 정비구역		35,613.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2.9.)에 따른 정비사업 명칭(주택재건축→재건축) 변경

2.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4,142.0	증)1,471.8	35,613.8	100.0	-
정비기반 시설등	총계	6,621.0	감)2,713.6	3,907.4	11.0	-
	도로	3,646.0	증)261.4	3,907.4	11.0	-
	공원	2,130.0	감)2,130.0	-	-	-
	광장	845.0	감)845.0	-	-	-
획 지		27,521.0	증)4,185.4	31,706.4	89.0	-

3.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4,142.0	증)1,471.8	35,613.8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증)1,336.0	1,336.0	3.8	
	제3종일반주거지역	34,142.0	증)135.8	34,277.8	96.2	

※ 구역계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증가사항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도로) :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	6~8	국지 도로	147	봉천동 715-69	봉천동 1500-1	일반 도로	-	서고 제2009-47	-
변경	소로	2	1	6	국지 도로	154			일반 도로	-	5호 (‘09.11.26)	-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100	봉천동 산141-1	봉천동 720	일반 도로	-	서고 제1994-74 호 (‘94.03.10)	-
변경	소로	1	A	10	국지 도로	285	봉천동 708-7	봉천동 1509-1	일반 도로	-	-	-

※ 도로번호 A는 임시번호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1	소로2-1	• 변경 - 폭원 : 6~8m→6m - 연장 : 147m→154m	• 동일한 폭원으로 막다른 도로 기준 준수																																																			
소로3-3	소로1-A	• 변경 - 폭원 : 6m→10m - 연장 : 100m→285m	• 실효(관악구고시 제2020-146호)에 따른 재결정 - 종전 결정한 소로1-1(B=10m,L=147m), 소로1-2(B=10m,L=198m)은 동일한 폭원임으로 하나의 도로로 통합하여 재결정 ※통합(소로1-A)의 종전 결정사항 (2009.11.26.)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4">규모</th><th rowspan="2">연장 (m)</th><th colspan="2">위치</th><th rowspan="2">최초결정일</th></tr><tr><th>등급</th><th>류별</th><th>번호</th><th>폭원(m)</th><th>기점</th><th>종점</th></tr><tr><td>기정</td><td>소로</td><td>3</td><td>3</td><td>6</td><td>100</td><td>봉천동 산141-1</td><td>봉천동 720</td><td>94.3.10.</td></tr><tr><td>변경</td><td>소로</td><td>1</td><td>1</td><td>10</td><td>147</td><td>봉천동 708-7</td><td>봉천동 719-41</td><td>-</td></tr><tr><td>기정</td><td>소로</td><td>3</td><td>2</td><td>6</td><td>300</td><td>봉천동 716-2</td><td>봉천동 728-72</td><td>94.3.10.</td></tr><tr><td>변경</td><td>소로</td><td>1</td><td>2</td><td>6~10</td><td>198 (130)</td><td>봉천동 716-2</td><td>봉천동 1509-1</td><td>-</td></tr></table>	구분	규모				연장 (m)	위치		최초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3	3	6	100	봉천동 산141-1	봉천동 720	94.3.10.	변경	소로	1	1	10	147	봉천동 708-7	봉천동 719-41	-	기정	소로	3	2	6	300	봉천동 716-2	봉천동 728-72	94.3.10.	변경	소로	1	2	6~10	198 (130)	봉천동 716-2	봉천동 1509-1	-
구분	규모				연장 (m)	위치		최초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3	3	6	100	봉천동 산141-1	봉천동 720	94.3.10.																																														
변경	소로	1	1	10	147	봉천동 708-7	봉천동 719-41	-																																														
기정	소로	3	2	6	300	봉천동 716-2	봉천동 728-72	94.3.10.																																														
변경	소로	1	2	6~10	198 (130)	봉천동 716-2	봉천동 1509-1	-																																														

나) 공간시설(공원) : 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공원	소공원	봉천동 728-20번지 일대	2,130.0	감)2,130.0	-	서고 제2009-475호 (2009.11.26.)	-

■ 소공원(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원	• 폐지 - 면적 : 2,130.0㎡ - 용도 : 소공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공원녹지 확보기준 개정(구역면적 3ha→5ha)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획지로 변경하고자 함.

다) 공간시설(광장) : 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광장	건 축 물 부설광장	봉천동 728-158번지 일대	845.0	감)845.0	-	서고 제2009-475호 (2009.11.26.)	-

■ 광장(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장	• 폐지 - 면적 : 845.0㎡ - 용도 : 건축물 부설광장	• 기존 보차혼용통로와 상충하는 세장형 광장 대신 공공보행통로 및 대지 내 공지(5m)를 통한 교차부 개방감 확보와 안전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정비 개량 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봉천1-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4,142.0	택지	27,521.0	135	-	-	135	-	-
변경	봉천1-1 재건축 정비구역	35,613.8	획지	31,706.4	135	-	-	135	-	-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 (층수) (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준	허용	상한	법적 상한		
기정	봉천1-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4,142.0	택지	27,521.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10	-	249.77	279.38	90이하 (최고 30층 이하)	-
변경	봉천1-1 재건축 정비구역	35,613.8	획지	31,706.4		50 이하	210	227	242.55	267.22		-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규모 및 비율									
			구분(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비고					
			계		714세대	100.0	-					
			85㎡ 이하	60㎡ 이하	276세대	38.7	(임대주택 50세대)					
				60~85㎡ 이하	318세대	44.5	-					
85㎡ 초과		120세대	16.8	-								
• 전용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83.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25m 도로변 : 3m 이상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단지 중앙 보차혼용통로 설치 : 폭 10m - 보차혼용통로에 대해서는 주택과-22588호(2009.11.20.)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지상권 설정(구분지상권자 : 관악구청장)									
변경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규모 및 비율									
			구분(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비고					
			계		807세대	100.0	-					
			85㎡ 이하	60㎡ 이하	331세대	41.0	(임대주택 50세대)					
				60~85㎡ 이하	414세대	51.3	(임대주택 16세대)					
85㎡ 초과		62세대	7.7	-								
• 전용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86.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보라매로변 : 대지경계로부터 5m • 그 외 도로변 및 북측 : 대지경계로부터 3m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단지 중앙 공공보행통로 설치 : 폭 10m									

다)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구분		산정내용								
기정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계획 정비기반시설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소계	도로	공원	광장			
			34,142.0㎡	27,521.0	6,621.0	3,646.0	2,130.0	845.0	1,522.7	-
	공공시설등 제공 면적 (순부담)	• 5,098.32㎡ ※ 순부담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6,621.0㎡ - 1,522.68㎡ = 5,098.32㎡(구역 대비 14.9%)								
변경	토지이용계획	합 계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공공시설등 면적(A+B)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소계	정비 기반시설	공공시설 (임대주택, 문화시설)				
					①도로	②대지지분	③환산부지			
			35,613.8	31,706.4	5,294.0	3,907.4	756.7	629.9	1,467.0	1,905.4
		공공시설등 제공 면적 (순부담)	• 순부담 =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등 면적(A+B)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국·공유지 면적 ⇒ (3,907.4㎡ + 756.7㎡ + 629.9㎡) - 1,467.0㎡ - 1,905.4㎡ = 1,921.7㎡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면적 (A=①+②)	• 도로 3,907.4㎡ • 건축물 기부채납(임대주택) 대지지분 : 578.9㎡ (※공급연면적 1,546.65㎡) • 건축물 기부채납(문화시설) 대지지분 : 177.8㎡ (※공급연면적 475.00㎡)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환산부지 면적 (B=③)	• 건축물 기부채납(임대주택) 환산부지 면적 : 231.7㎡ (※공급연면적 1,546.65㎡) = ㉞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원) / ㉟ 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㉞ = 제공연면적 × 설치비용 기준 ^{주1)} = (전용49㎡) 408.15㎡ × 1,069,000원 = 436,312,350원 = (전용59㎡) 489.63㎡ × 1,037,500원 = 507,991,125원 = (전용79㎡) 648.87㎡ × 1,036,800원 = 672,748,416원 ⇒ 1,617,051,891원 : ㉟ = 공시지가 ^{주3)} × 2 = 3,488,668 × 2 = 6,977,336원 • 건축물 기부채납(문화시설) 환산부지 면적 : 398.2㎡ (※공급연면적 475.00㎡, 지하주차장 포함 면적 1,004.00㎡) = ㉞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원) / ㉟ 용적률을 완화받고자하는 부지가액(원/㎡) : ㉞ = 제공연면적 × 설치비용 기준 ^{주2)} = 1,004.00㎡ × 2,767,272원 = 2,778,341,818원 : ㉟ = 공시지가 ^{주3)} × 2 = 3,488,668 × 2 = 6,977,336원								
		주1)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부고시 제2016-339호) : (전용49㎡)1,069,000원/㎡, (전용59㎡)1,037,500원/㎡, (전용79㎡)1,036,800원/㎡ 주2) 2020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 : 3,044,000원/㎡(청소년·문화수련시설 연면적 1,500㎡미만)의 부가세 제외 금액 주3) 건축허가시점 직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2020.08 기준) (대상지 내 평균공시지가)								

기준(계획)용적률 (변경없음)		• 210%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계획용적률)			
허용 용적률	기정	-			
	변경 (신규)	• 227% (기준용적률 210%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 17%)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17%) - 세입자이주대책(5%), 에너지효율등급1등급·녹색건축인증최우수(3%, 의무3% 제외 적용), 지능형건축물 3등급(9%)			
개발가능 (상한) 용적률	기정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1.3α) ⇒ 210% + (210% × 1.3 × 0.1852) = 260.56% <table><tr><td>α</td><td>α = 공공시설등부지 제공면적/공공시설등부지 제공 후 부지면적 = 5,098.32㎡ / 27,521.0㎡ = 0.1852</td></tr></table>	α	α = 공공시설등부지 제공면적/공공시설등부지 제공 후 부지면적 = 5,098.32㎡ / 27,521.0㎡ = 0.1852	
	α	α = 공공시설등부지 제공면적/공공시설등부지 제공 후 부지면적 = 5,098.32㎡ / 27,521.0㎡ = 0.1852			
변경	• 정비계획 용적률 : 249.77%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α(건축물)) ⇒ 227% × (1 + 1.3 × 1 × 0.0417 + 0.7 × 0.0204) = 242.55% • 정비계획 용적률 : 242.55% <table><tr><td>α (토지)</td><td>α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부지(토지*)제공 후 부지면적 = 1,291.7㎡ / 30,949.6㎡ = 0.0417</td></tr><tr><td>α (건축물)</td><td>α = 공공시설 등 부지(건축물 환산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부지면적 = 629.9㎡ / 30,949.6㎡ = 0.0204</td></tr></table>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 ‘기부채납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대지지분’ 포함	α (토지)	α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부지(토지*)제공 후 부지면적 = 1,291.7㎡ / 30,949.6㎡ = 0.0417	α (건축물)	α = 공공시설 등 부지(건축물 환산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부지면적 = 629.9㎡ / 30,949.6㎡ = 0.0204
α (토지)	α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부지(토지*)제공 후 부지면적 = 1,291.7㎡ / 30,949.6㎡ = 0.0417				
α (건축물)	α = 공공시설 등 부지(건축물 환산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부지면적 = 629.9㎡ / 30,949.6㎡ = 0.0204				
예정법적 상한용적률	기정	• 279.38% 이하			
	변경	• 267.22% 이하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관리사무소	획지	200.0	증)229.7	429.7	-
경비실/MDF실	"	50.0	-	50.0	-
주민공동시설	"	2,650.0	증)1,066.1	3,716.1	-
경로당	"	150.0	증)200.5	350.5	-
어린이집	"	200.0	증)230.5	430.5	-
작은도서관	"	100.0	증)133.5	233.5	-
어린이놀이터	"	1,200.0	증)58.8	1,258.8	-
주민운동시설	"	500.0	증)162.8	662.8	-
기타공동시설	"	500.0	증)280.0	780.0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가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 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 간선도로변에 양호한 녹지 수림대를 설치함으로써 green ville 이미지 창출 • 생태순환시스템 고려 • 자원절약형 배치기법(풍향·경관 고려)	-
재난 방지	화재 •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수해 • 자연토양유지 및 소공원의 조성을 통한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 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 수해방지를 위한 건축계획 수립 및 저류조 설치 등 안전대책 수립	
	교통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정비구역 주변현황	• 반경 600m 내 동측(당곡중학교, 당곡고등학교), 반경 200m 내 북측(새롬학교:특수학교, 사회복지시설), 남측(당곡초등학교) 입지하고 있으며, 대상지는 학교 3개소의 (새롬학교 외) '통학구역' 내 위치하고 있음 • 또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절대보호구역(일부), 상대보호 구역에 해당함 - 서울당곡초등학교 : 상대보호구역 (약3,925.2㎡, 구적면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인·허가등의 의제 등)에 의거하여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사업 시행 시	• 소음 및 진동은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공사차량 속도제한, 사업지구주변 경계부에 가설방음판넬 설치등 주변학교 학습에 영향을 최소화 하겠음 • 사업구역 외관으로 공사중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외부 차단함으로 보행의 영향은 없으나, 통학구역으로 학생 및 주민등 보행안전을 위하여 낙하물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대책 수립하도록 하겠음 • 등하교 시간 주가로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차량의 진출입시간의 제한을 두도록 하며, 부득이 할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겠음 • 또한, 당곡초등학교 및 당곡중·고등학교 통학로인 당곡길(15m, 계획시설 종로3-1호선)변 확보하는 보도는 우선적으로 조성하여 학생들의 보행동선을 확보하겠음 • 공사구간 위험지역 통과 시 안전한 차량유도 및 통행로 지정으로 도로상에서 야기되는 사고위험에 대하여 사전예방 시설물등을 설치하겠음	-
사업 완료후	• 사업지구 내 도로변에 가로수와 대지 내 녹지등 대기오염물질 정화 수정을 선정, 식재하여 이로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저감하도록 계획 • 사업지 및 통학로(당곡길10m)변으로 표지판(주의, 규제, 지시)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학생 보행통행의 안전을 기할 예정임 - 통학로변 보도 확폭 및 안전펜스 설치	-

※ 사업시행으로 인한 학생수 증가의 수용여부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 협의 시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9.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	34,142.0	관악구 봉천동 728-57번지 일대	27,521.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35,613.8		31,706.4	

10.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가) 공공임대주택

구분	건립위치	면적(㎡)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		비고 (제공연면적)
					전용	공급	
신규	획지	31,706.4	1	18세대	소 계		1,546.65
				6세대	49.98	68.03	408.15
				6세대	59.98	81.61	489.63
				6세대	79.98	108.15	648.87

나) 국민주택규모 주택(구 ‘재건축 소형주택’ 명칭 변경, ‘21.4.13 법령 개정)

구분	건립위치	면적(㎡)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		비고 (제공연면적)
					전용	공급	
기정	택지	27,521.0	-	50세대	59.98	81.96	4,098.00
변경	획지	31,706.4	-	총 48세대	소 계		3,924.42
				19세대	49.98	68.03	1,292.48
				19세대	59.98	81.61	1,550.50
				10세대	79.98	108.15	1,081.45

11.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현황	증·감	계획	
기정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봉천1-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471세대	증)243세대	714세대	-
변경			봉천1-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471세대	증)336세대	807세대	-

VI. 관계도면 : 생략 (기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